

2018년 꼭 알아야 할 병의원 관련 개정세법

신진혜

가현텍스 대표 세무사
viviana9910@nate.com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령에 의거 일부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개설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의료인, 특히 의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및 병원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하나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또 다른 역할은 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손익을 관리하고 인사·회계·재무 등 경영 제반 영역에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매년 바뀌는 세법 등 관련제도의 변경사항을 의사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본고를 통해 중요한 변동사항을 인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별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만큼 절세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기관 경영자로서 의사들이 고민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병의원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사업자와 관련한 세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올해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과세형평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 숙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챙기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도록 예방하도록 하자.

1. 고용 관련된 세제혜택의 개정내용

올해 새로운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면서 각종 당근과 채찍에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최저임금 16.4%인상(6,470원→7,530원),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증가(6.52%→6.7%), 국민연금상한액 증가 월 404,100원→월 421,200원, 연차휴가 확대 등 사업주 부담이 커졌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지원금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당근도 존재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달콤한 세제혜택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직원이 증가한 병의원이라면 이것만 잘 활용해도 탈세가 아닌 확실한 절세가 가능하다.

(1)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존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 두개를 합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다. 2017년보다 2018년 평균직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고용한 직원이 청년(만29세 이하) 또는 장애인이라면 1인당 1,000만(2년간 총2,000만원), 이외는 1인당 700만(2년간 총1,400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계산으로 세무사들도 어려워 실제 혜택을 받은 의사들이 많지 않다. 2015년 이후 개원하였거나 직원이 늘었는데 적용받지 못했다면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해 경정청구로 세금환급을 받도록 하자.

Ⅰ 표 1. 고용증대세제 신설 관련 변경 내용 Ⅰ

세액공제	2017년		2018년 개정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 고용증대세제
요건	투자 & 고용 동시 증가시	청년(만29세이하) 정규직 증가	투자없더라도 고용증가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장애인
공제금액	투자금액의 3~11%공제 (한도, 1인당 1,500~2,000만)	청년1인당 1,000만 공제 (2016년까지는 500만)	청년·장애인 등: 1,000만 (지방 1,100만) 상시근로자: 700만 (지방 770만)
지원기간	1년	1년	2년 (고용인원 유지 시 다음해도 공제)
중복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X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X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O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X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O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O
적용기한	'17.12.31	'17.12.31	'20.12.31

(2)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직원의 4대보험료 일부는 병의원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 증가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액공제이다. 대상에 따라 청년은 100%, 이외는 50%를 2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추후 근로자수가 줄어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아 요건이 된다면 최대한 받도록 하자.

표 2.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관련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공제금액	고용증가인원 X 사회보험료 상당액 X 50% (100%:청년.경력단절여성)	
공제기간	1년	2년 (고용인원 유지시: 다음해도 공제)
적용기한	'18.12.31 까지	

표 3. 청년·장애인 1명 추가 채용 시

18.1.1 입사	2018년 공제액				1년간 공제액	2년간 공제 총액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0%	지방소득세 10%	농특세 (-20%)		
연봉 1,500만	1,000만	140만	114만	(200만)	1,054만	2,108만
연봉 2,000만	1,000만	187만	119만	(200만)	1,106만	2,212만
연봉 3,000만	1,000만	281만	128만	(200만)	1,209만	2,418만

위의 (1) 고용증대세제와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개원 시 여러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면 당분간 소득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증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말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1인당 1,000만원(2년간 총 2천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 퇴사 시 공제금액을 추징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변화

표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증가 관련 변경 내용

	현행	개정안
적용요건	'16.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7.12.31까지 정규직 전환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X 1인당 700만 (17.3.28 조특법 개정안 200만→700만)	1인당 1,000만
고용유지기간	1년	2년
적용기한	'17.12.31	'18.12.31

2. 병의원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42% (2016년 38%, 2017년 40%)로 조정된다. 이는 과세표준 5억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까지 합하여 거의 53%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과세표준 6억일 경우 부담액은 2016년 2억 6,846만에서 2018년 2억 7,726만으로 약 88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포함). 고소득자들에게만 과세강화를 실천하는 개정내용으로, 법인전환을 할 수 없는 병의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표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정안

2017년		2018년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	15%	1,200~4,600만	15%
4,600~8,800만	24%	4,600~8,800만	24%
8,800~1억5천만	35%	8,800~1억5천만	35%
1억5천만~5억	38%	1억5천만~3억	38%
5억 초과	40%	3억~5억	40%
		5억 초과	42%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보류

성실신고확인제도 첫 대상은 수입금액 7.5억 이상이었으나 2014년 5억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세법개정안에서는 2020년부터 3.5억으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는 보류되었을 뿐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한도를 100만 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려 혜택은 다소 늘렸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 요구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3)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료기기 등) 처분손익 과세 신설

그 동안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다른 유형고정자산 처분 시 그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는 의료장비 등의 처분으로 차익발생 시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1억 구입 후 2년간 7천만 원 감가상각비(비용처리) 가정 시 장부가액은 3천만 원이 된다. 이때 다른 의사에게 중고로 5천만 원에 판다면 차익 2천만 원은 사업소득이 된다. 세율이 41.8%(지방소득세 포함)일 경우 소득세 83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7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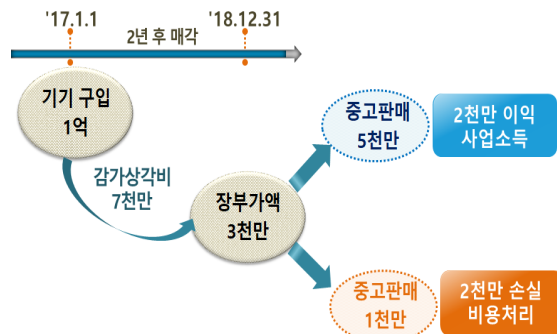


그림 2. 1억 기기의 중고처분 시 과세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이때 매출이 4.7억이라면 중고기기 판매금액 3천만 원을 포함하면 5억이 넘으니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버린다. 혹시라도 올해 중고의료장비를 거래하는 경우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4) 병원 주소이전으로 인테리어 철거 시 비용처리 가능

병의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최소 4~5년 이상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게 된다. 이때 폐업 또는 이전 시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를 철거하게 되고, 아직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비용처리 할 수 없어 손해였다. 하지만 세법개정이 되어 폐업(2017년부터)과 주소이전(2018년부터)을 하게 될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일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이 2016년 총수입금액 10억 이상이라면, 올해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8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자로 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병의원에서 검진매출 및 의료기기 판매가 있을 경우 종이가 아닌 전자로, 모아서가 아닌 매달 발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과세사업자(성형외과, 피부과 등)는 이미 3억으로 변경된 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면세사업자는 아직 전자계산서 발급이 익숙지 않다. 지연발급 등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전자계산서 발행함에 유의해야 한다. 방법을 잘 모른다면 담당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6) 병의원 양도시 영업권(권리금) 기타소득 과세변경

세법에서 부동산 양도와 함께 지급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병의원을 양도하면서 받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권리금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이때 권리금에서 일정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60%로 필요경비율이 축소된다.

예를 들어, 병의원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1억 받기로 한 경우, 필요경비가 8천만→7천만→6천만으로 줄어들어 추가 소득세가 836만(2017년)→1,254만(2018년)→1,672만(2019년)으로 증가한다.

물론 양수한 원장은 1억을 지급하였으므로 1억 전부 비용 처리가능하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축소되어 다소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양도자의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병의원양수도시 영업권(권리금)을 절세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표 6. 병의원 양도시 영업권(권리금) 기타소득 과세변경 내용 ▣

	~'17년	'18년	'19년 이후
기타소득	1억원		
(-)비용 (필요경비)	80%	70%	60%
= 기타소득금액	2,000만	3,000만	4,000만
소득세 추가발생분 (세율 41.8%일 경우)	836만	1,254만	1,672만
수입대비 세금부담비율	8.36%	12.54%	16.72%

(7)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

탈세를 제보하였을 때의 신고포상금 한도가 맨 처음 1억으로 시작하여 10억(2013년)→20억(2014년)→30억(2015년)→40억(2018년)까지 상향되었다. 제보로 인한 추정세액이 최근 계속하여 1조를 넘기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한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포상금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자고발 등 제보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유의해야 한다.

3. 자산과 관련된 세법개정내용

(1) 대주주 범위 확대

소액주주로 주식투자를 하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22%이지만 과세표준 3억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인상된다(중소기업은 2019년부터).

대주주 범위 또한 표처럼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말 일자 지분율과 종목별 보유액을 확인하여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Ⅰ 표 7. 대주주 범위 확대관련 내용 Ⅰ

	현행	'18.4월	'20.4월	'21.4월
유가증권시장	1%이상 or 25억원 이상	1%이상 or 15억원 이상	1%이상 or 10억원 이상	1%이상 or 3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이상 or 20억원 이상	2%이상 or 15억원 이상	2%이상 or 10억원 이상	2%이상 or 3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이상 or 10억원 이상		4%이상 or 3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4%이상 or 25억원 이상	4%이상 or 15억원 이상	4%이상 or 10억원 이상	4%이상 or 3억원 이상

(2)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등 투자 시 100%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1,500만에서 3,000만으로 증가한다.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유리하게 세법개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활용하는 의사는 많지 않다. 2018년 3천만 원 투자 시 절세금액만 1천만 원 이상이니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다. 대상기업을 잘 판단하여 투자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엔젤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Ⅰ 표 8.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Ⅰ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	출자금 =소득공제	절세효과
8,800~1억5천만	35%	3천만	1,155만
1억5천만~3억	38%		1,254만
3억~5억	40%		1,320만
5억 초과	42%		1,386만

(3)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내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2주택은 10%, 3주택은 20% 가산하여 종과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표 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내용 |

유형	'17.8.3 이후	'18.4.1 이후
1주택자	2년 보유 비과세(9억내)	2년 보유+2년 거주 비과세(9억내)
2 주택자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세율 +10%P 장기보유특별공제X
3 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X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포함되고,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기간과 관계없이 세율 50%를 적용한다. 부동산투자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많은데, 개정된 세법을 잘 숙지해야만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전산발달로 투명해지는 세금환경에서는 예전의 주먹구구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 좀 더 세밀하고 시스템적인 세무전략과 관리가 요구되지만 스스로 챙기기에는 용어부터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필자역시 앞에 나열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다. 요즘 세법은 세무사들조차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이니 말이다.

다만 진료실에서 열심히 일해 번 돈이 과도한 세금으로 또는 잘못된 투자로 제대로 쌓이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소한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고 든든한 세무파트너를 옆에 두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안내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 병원전문 세무사들도 많으니 나와 잘 맞는 파트너를 열심히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겠다.